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112
- 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 (찬성자 11명)
- 발 의 일 : 2021년 1월 19일
- 회 부 일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하여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,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필요 사항을 마련(기존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」에서 이관)하고, 가지조문을 정비하는 등 근거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(안 제4조)
- 나.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입법예고('20. 2. 16.~2. 23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고, 가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지방세기본법

제10조(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)

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(地方稅收)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.

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

- 현행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제9조 및 제10조) 및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」(제26조 및 제27조)에 근거하여, 당초 구세(區稅)인 재산세 징수액의 50%를 시세인 ‘특별시분 재산세’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목적으로 구 「지방세법*」 개정(2007.7.20.)을 통하여 2008년 재산세 세입분부터 시행된 제도임.

* 구 지방세법 [시행 2007. 7. 20.] [법률 제8540호, 2007. 7. 20., 일부개정]

◇개정이유

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(區)의 재산세를 “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”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함.

◇주요내용

가.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(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)
특별시 자치구(區)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

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(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)를 “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”로 하고,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.

- 이후,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규정이 「지방세기본법」(제정, 2011.1.1.)으로 이관 규정되었음에도,

지방세기본법 [시행 2011. 1. 1.] [법률 제10219호, 2010. 3. 31., 제정]

◇제정이유

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,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,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.

◇관련 조문

제9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)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)는 제8조에 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(區)분 재산세는 각각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(區)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.

③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.

제10조(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)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(地方稅收)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.

-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아직까지 「지방세법」에 근거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」에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4577호, 2007. 11. 1., 일부개정 시 신설)되어 유지되고 있는바,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[현행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장 특별시분 재산세

제26조(특별시분 재산세 교부) 시장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.

제27조(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)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. 다만,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준,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옮겨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나.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

1)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조제2항에서 특별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,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- 이는 자치구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 징수액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상태를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< 최근 3년간 결산상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현황 >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9년	2018년	2017년
교부액	1,300,009	1,165,213	1,077,375

※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

<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> (결산액 기준)

2019년도	○강남,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0.1배(강남 5,712억, 강북 284억)에서 5.0배(강남 3,400억, 강북 686억)로 완화
2018년도	○강남,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7.7배(강남 4,792억, 강북 271억)에서 4.7배(강남 2,869억, 강북 610억)로 완화
2017년도	○강남, 도봉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.7배(강남 4,289억, 도봉 257억)에서 4.6배(강남 2,577억, 도봉 561억)로 완화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(특별시분 재산세 교부)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.

※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를 이관하여 규정

- 다만,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액의 격차가 5.1배(2020년도 결산 전망, 강남구 6,512억 대비 강북구 298억(21.9 배) → 강남구 3,870억 대비 강북구 763억(5.1배))에 달하고 있는바,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부 방법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3) 조항의 번호 정비(안 제5조부터 제13조)

- 안 제6조부터 제13조는 안 제4조와 제5조 신설과 서로 연관성이 없는 현행 가지조문(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)에 각각 새로이 조항을 부여하여, 현행 조항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끌어내려 부여하는 개정을 통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</u> (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 (생략)	<u>제6조</u> (현행 제4조와 같음)
<u>제5조</u> (서류송달의 방법) (생략)	<u>제7조</u> (현행 제5조와 같음)
<u>제5조의2</u> 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(생략)	<u>제8조</u> (현행 제5조의2와 같음)
<u>제5조의3</u> 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(생략)	<u>제9조</u> (현행 제5조의3과 같음)
<u>제5조의4</u> (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(생략)	<u>제10조</u> (현행 제5조의4와 같음)
<u>제6조</u> (교부금전의 예탁) (생략)	<u>제11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<u>제7조</u> (지방세심의위원회) (생략)	<u>제12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
<u>제8조</u> (시행규칙) (생략)	<u>제13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

4) 부칙

- 부칙 안 제1조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, 안 제2조는 본 조례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해당 조항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. 결어

- 본 개정 조례안은 4개의 지방세 관련법령 체계(첨부자료 참조)에 맞게 관련 조례의 통일된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,
 - 본 조례의 근거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제정(2011.1.1.) 이후 10년이 경과 되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규정을 다른 근거법령에 근거한 조례(서울특별시 시세 조례)에 방치하였는바,
 -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최석훈
------	-----	-------	-----

참고 자료

- 지방세 관련 4개 법령별 위임 조례 현황 -

지방세 관계 법령		위임조례	
법명	목적사항	조례명	목적사항
지방세 기본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,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		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·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징수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특례제한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